

건설·기술직 종사자

Building and construction employees

목수, 전기공, 배관공, 타일공, 미장공, 도장공, 용접공, 조경, 현장관리자, 견습생

2025-26 회계연도 · FY2026 신고서 기준

공제의 3원칙 — 아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

1. **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회사에서 돌려받지 않았을 것** — 회사가 사주거나 비용을 환급(reimbursement)해 준 물건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.
2. **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을 것** — 업무용과 개인용을 함께 쓰는 물건은 업무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합니다.
3. **증빙을 보관하고 있을 것** — 대부분의 경우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 은행 명세서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
소득 신고 시 주의

현장수당(site allowance), 악천후수당(inclement weather allowance)처럼 근무 여건을 보상하는 수당은 소득으로 신고해야 하지만, 그 자체로는 공제가 생기지 않습니다. 반면 공구수당·세탁수당은 실제로 지출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. 이 안내는 고용된 직원(employee)을 위한 것으로, ABN으로 일하는 하청(contractor)은 사업 경비 규정이 적용됩니다.

공제 가능한 항목 What you can claim

✓ 공구와 장비

끌 세트, 그라인더, 전동 톱, 드릴, 공구함 등. 개당 \$300 이하는 즉시 전액 공제, 초과 시 감가상각.

✓ 공구 수리비와 보험료

업무용 공구의 수리비, 그리고 공구 보험료 중 업무 사용분.

✓ 안전화·형광조끼·보호복

안전화, 고무장화, 미끄럼 방지 신발, 형광 안전조끼, 내화복, 장갑, 절단 방지 작업복, 방수복, 작업복(오버올).

✓ 안전장비

안전경, 고글, 안전모, 용접 헬멧, 방진 마스크, 귀마개. 수리·교체·세척비도 포함.

✓ 자외선 차단 용품

야외에서 장시간 일하는 경우 선크림, 챙 넓은 모자, 선글라스(도수 있는 선글라스 포함). 개인적으로도 쓴다면 업무 사용분만.

✓ 세탁비

보호복과 유니폼의 세탁·건조·다림질. 드라이클리닝과 수선은 실제 금액으로 청구합니다.

✓ 현장 간 이동

같은 날 한 현장에서 다른 현장으로 이동한 거리. 고정된 근무지 없이 하루에 여러 현장을 계속 옮겨 다니는 경우에는 집에서 첫 현장까지, 마지막 현장에서 집까지도 공제됩니다.

✓ 부피가 큰 공구를 옮기는 통근

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가능합니다. ① 업무에 반드시 필요한 공구이고, ② 크기나 무게 때문에 차로만 옮길 수 있을 만큼 부피가 크며, ③ 현장에 안전한 보관 장소가 없고, ④ 집으로 가져가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불가피할 것.

✓ 면허·자격 갱신

배관공 면허, 중장비 면허 등 현재 일을 계속하기 위한 갱신비. 일반 운전면허는 제외됩니다.

✓ 업무 관련 교육

현재 하는 일의 기술을 향상시키는 과정. 수업료, 교재, 문구류, 교육장까지의 교통비.

✓ 초과근무 식대

초과근무 수당을 소득명세서에 별도로 받고 신고한 경우. 2025-26년 기준 1회 \$38.65까지는 영수증 없이 가능합니다.

✓ 전화·인터넷 업무 사용분

업무 사용 비율만큼. \$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.

✓ 노조 회비

전액 공제됩니다.

공제할 수 없는 항목 What you cannot claim

✗ 집과 고정 현장 사이 통근

거리가 멀어도, 교대·대기 근무여도, 가는 길에 자재를 픽업해도 개인 비용입니다. 회사가 교통수당을 줘도 그 자체로 공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.

✗ 현장에 보관 장소가 있는 경우의 공구 운반

안전한 공구함이나 창고가 제공되는데도 집에 가져간다면 본인 선택이므로 공제되지 않습니다.

✗ 처음 취득하는 면허·자격증

취업하기 위해 따는 면허(예: 벽돌공 면허, 화이트카드)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. 이미 일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갱신만 가능합니다.

✗ 일반 운전면허 취득·갱신

운전이 업무 조건이어도 개인 비용입니다. 중장비 등 특수면허의 추가 비용만 공제됩니다.

✗ 청바지·작업 바지·일반 셔츠·운동화

보호 기능이 없는 평상복은 회사가 요구해도 공제되지 않습니다.

✗ 평소 근무일의 식사

초과근무 수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개인 비용입니다.

✗ 벌금과 과태료

업무 중 발생한 신호위반·과속·적재물 위반 벌금 모두 공제할 수 없습니다.

✗ 회사가 제공하거나 환급한 것

회사가 안전모·마스크·보안경을 지급하거나 본인이 산 것을 환급해 준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✗ LAFHA로 지원받은 숙식비

생활지원수당(living-away-from-home allowance)으로 지급받은 숙박·식사는 신고도 공제도 하지 않습니다.

금액 기준 Key thresholds — 2025-26

항목	기준
자동차 Car expenses	킬로미터당 88센트, 연간 최대 5,000km까지. 이 방법을 쓰면 연료비·정비비·보험료를 따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.

재택근무 Working from home	시간당 70센트 고정요율. 실제 재택 근무시간 기록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, 추정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.
세탁 Laundry	업무복만 세탁한 경우 1회당 \$1, 개인 옷과 함께 세탁한 경우 1회당 50센트. 연간 \$150 이하 면 영수증이 없어도 됩니다.
경비 합계 \$300 Total work expenses	업무 관련 경비 합계가 \$300을 넘으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체 항목에 대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.
물품 1개당 \$300 Single asset limit	개당 \$300 이하는 구입한 해에 전액 공제. \$300을 넘으면 사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(decline in value)합니다.
전화·인터넷 Phone and internet	업무 사용이 부수적이고 청구액이 \$50 이하면 별도 기록이 필요 없습니다. \$50을 넘으면 사용 내역이 필요합니다.
소액 경비 Small expenses	건당 \$10 이하는 연간 총 \$200까지 메모(날짜·판매처·금액·내용)로 영수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.
보관 기간 Record retention	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. 감가상각 자산은 마지막으로 공제한 해로부터 5년입니다.

다음 연도(FY2027)에 달라지는 점

2026년 7월 1일부터 근로 관련 경비에 대해 최대 **\$1,000**의 표준공제(standard deduction)가 도입되어, 영수증 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. FY2027 신고서부터 적용되며 이번 신고와는 무관합니다. 실제 경비가 \$1,000을 넘는 분은 지금처럼 실비로 청구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영수증을 계속 모아 주십시오. 또한 FY2027부터는 의류·세탁·수선·드라이클리닝 공제에 **모두 증빙이 필요합니다**. 세탁 \$150 이하 면제 규정은 이번 신고가 마지막입니다.

USQ CHARTERED ACCOUNTANTS

T. +61 3 9070 4790 · mark.kim@unitedsq.com · www.unitedsq.com

Waterman Collins Street, Level 2, 260 Collins Street · 44 Lakeview Drive, Caribbean Park, Scoresby

본 안내는 호주국세청(ATO)의 Building and construction employees 직업별 안내를 바탕으로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이며,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이 아닙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판단은 담당 회계사와 상의해 주십시오.

원문: <https://www.ato.gov.au/individuals-and-families/income-deductions-offsets-and-records/guides-for-occupations-and-industries/a-d/building-and-construction-employees-income-and-work-related-deductions>